

어린이집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계약서

[illegible]

서비스 기본계약서

제 1 조(계약 당사자)

주식회사 에스원(이하 "회사")와 발주자 (이하 "어린이집")는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어린이 스마트안전지킴이(이하 "서비스")" 상용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와 "어린이집"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본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3 조(용어 정의)

1. 리더기란 NFC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태그의 정보를 확인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2. 태그란 NFC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어린이집에 등록된 어린이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전자출결 장비란 리더기와 태그를 함께 지칭할 경우를 말한다.

제 4 조(서비스 내역)

1. "회사"는 "어린이집"에게 유,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역
사용자용	.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보호자용 서비스
관리자용	.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어린이집/교사용 서비스

제 5 조(서비스 이용료의 정산)

1. "어린이집"은 첨부된 CMS 출금이체, 은행자동이체 및 기타 방법으로 출금은행계좌에서 지정된 납부일에 매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제 6 조(전자출결 장비(태그, 리더기) 설치 및 하자 처리)

1. 전자출결 장비는 "회사"와 "어린이집"간 상호 협의한 날짜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전자출결 장비의 하자 처리 기간은 본 사업의 계약기간내로 한다.
3. "태그"의 인식 불량 및 오인식일 경우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 하여야 한다.
단, 분실 또는 파손시 필요수량 만큼 추가 구입하며 "회사"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4. "리더기"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어린이집"의 요청에 따라 즉시 "리더기"를 교체 또는 무상

수리 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은 “리더기”의 수리 및 교체에 따른 비용을 “회사”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 7 조(교육 및 민원 대응)

1. “회사”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최초 설치 시 및 “어린이집” 요청 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 및 장애 등 민원 대응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시간(09:00~19:30)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그 외 시간은 ARS/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민원 응대를 하여야 한다.

제 8 조(개인정보보호의무)

1. 본 계약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보로서 각 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구두, 문서, 디지털파일 등 그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어린이집” 회원의 정보를 말한다.
2. 계약당사자는 “어린이집” 회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시에 회원에 대한 본인확인을 수행하고, 회원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하여 이에 대한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본 계약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사전 서명 승인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복사, 복제, 가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판매, 발표할 수 없다.
3.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조항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항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제재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자기의 비용으로 상대방을 면책시켜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이 있을 경우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9 조(양도 등 금지)

계약당사자는 상호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본 협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계약의 해지)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혹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해지 의사표시는 사전고지(2개월 전)하여야 하며 “회사”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어린이집”의 업무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업체로 이관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
2. 계약당사자 일방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받아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계약당사자가 부도, 폐업, 파산, 회생절차개시 등의 신청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계약당사자가 귀책사유로 인해 영업상의 중대한 손해 또는 회원관리에 심각한 사태를 초래한 경우
5. 기타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곤란할 경우

제 11 조(손해 배상)

양 당사자 각각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서비스수행자의 귀책으로 전자출결 서비스 장애발생 등 사유로 발주자(어린이집) 손해 발생 시 장애기간과 피해금액을 고려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발주자(어린이집)의 계약 설치비 및 이용료 등 미납으로 인해 서비스수행자의 손해 발생 시 발주자는 서비스수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기타 계약당사자간 계약 미이행으로 인해 상대방에 손해 발생 시 관련 법적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비밀 유지)

1. “회사”는 본 사업의 이행과 관하여 “어린이집”으로부터 얻은 사실을 본 사업이행 중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회사”는 서비스 수행 관련자에 대하여는 “1”항 의무를 알려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한다.
3. 본조의 위반으로 “어린이집”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보칙)

1. 계약당사자는 상호 문서합의 후 “어린이집”의 승인을 득한 후 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 후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반관례에 따른다.
3.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5. 본 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끝.

[별첨]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어린이집(이하 “갑”이라 한다)과 에스원 with 키즈노트(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서비스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학부모님에게 아동의 등/하원 알림 메시지 전송
2. 아동의 등하원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원 포털로 연계/인증 진행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을”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1년에 (1)회 점검하여 “갑”에게 보고한다. “갑”은 점검결과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주 소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7길 25

성 명 :

(인)

(주)에스원

정 해 린

(인)